

위생용품 품목제조보고서

※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 (앞쪽)

보고인	성명(법인인 경우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)	생년월일(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)
	주소(법인인 경우 법인 소재지)	전화번호
		휴대전화
영업소	명칭 또는 상호	영업신고번호
	소재지	
제품정보	위생용품의 유형	
	제품명	
	유통기한(해당 제품)	제조일부터 일(월, 년)
	원료·성분의 명칭 및 그 배합비율 뒤쪽에 기재	
	용도 용법	
	보관방법	
	포장방법 및 포장단위	
	성상(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는 제외합니다)	
기타	※ 위탁생산 시 위탁생산 내역 기입(수탁업체명, 소재지 등)	

「위생용품 관리법」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품목의 제조·가공사항을 보고합니다.

년 월 일

보고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제출서류	제조방법에 대한 설명서 1부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----------	-----------

(원료·성분의 명칭 및 그 배합비율)

No.	원료명 또는 성분명	배합비율 (%)	No.	원료명 또는 성분명	배합비율 (%)
1			16		
2			17		
3			18		
4			19		
5	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유의사항

- 품목제조보고서는 제품생산의 시작 전이나 시작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원료·성분의 명칭 및 그 배합비율을 적을 때 다음의 사항을 참고합니다.
 - 혼합원료는 혼합된 개별 성분의 명칭을 모두 적습니다.
 - 배합비율 표시는 「위생용품 관리법」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사용기준이 정해져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.